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천기본계획에 상습 침수 지역 정비계획 포함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4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하천기본계획에 상습 침수 지역 정비계획 포함	2
※ 참고자료	9
1. 하천정비계획 개요	9
2. 하천공사(하천정비사업) 절차	10

I. 제안경위

2025년 8월 7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하천기본계획에 상습 침수 지역 정비계획 포함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방재지구¹⁾, 자연재해 위험지구²⁾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7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생략)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 중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산사태, 침수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³⁾, 국가하천은 기후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함⁴⁾.

현행법 제25조⁵⁾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등에 필요한

- 3)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4) 「하천법」 제2조(정의)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5)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공사를 실시⁶⁾하여야 하며(참고자료1. 하천공사 절차),

동 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 홍수방어 계획, 하천공사 시행,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⁷⁾.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며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하천구역의 도시·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6)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7)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하천법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구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구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구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9) 「하천법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3. 해당 하천구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¹⁰⁾에 따라 하천 변 상습침수구역이나 저지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습침수(우려)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약 1조 4천억원('24년 결산 기준)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용량 확대(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신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¹¹⁾,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단체별로 도심 저지대, 반지하 주택가 등 침수 위험지역에 도시침수계와 침수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재난안전상황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¹²⁾.

10)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약 3,195억원으로 해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행정안전부, 재해연보, 2022)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태풍	1,690	5,291	13,404	214,965	-	64,200	212,778	222,541	21,086	244,046	1,000,001	100,000
호우	158,129	142,211	1,213	35,887	101,592	53,800	1,651	1,035,172	40,646	322,559	1,982,800	196,286
대설	11,342	32,421	13,021	18,689	83	14,032	671	-	3,527	15,439	109,225	10,923
풍랑	44	-	333	-	-	2,823	-	-	-	-	3,200	320
강풍	932	95	3,891	-	-	7	7	-	445	26	5,403	540
풍랑·강풍	-	-	-	8,302	605	-	474	319	-	585	10,285	1,029
태풍·호우	-	-	-	-	-	6,416	-	-	-	-	6,416	642
낙뢰	-	-	-	-	-	-	26	-	52	-	78	8
한파	-	-	-	-	-	-	-	145	280	-	425	46
지진	-	-	-	11,020	85,022	-	-	-	-	-	96,042	9,604
우박	-	-	-	-	-	-	-	-	16	-	16	2
기타	미산정					7	618	-	-	-	625	63
합계	172,137	180,019	31,862	288,862	187,302	141,284	216,226	1,318,177	66,053	592,656	3,194,578	319,458

1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년말 기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210개소(누적) 지정·관리 중

그런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의 적정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고, 구조적 보완을 실시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현행법상 하천기본 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과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은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4호13)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14)에 따른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방재지구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u>풍수해 등 재해예방</u> 을 위해 필요한 지구로, 방재지구의 결정 및 재해저감 대책을 지자체가 <u>도시·군관리계획</u> 을 수립
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가 <u>상습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u> 등을 수립

12) “인천시, ‘상습침수지역 관제시스템구축사업’완료” The인천뉴스, 2025. 6.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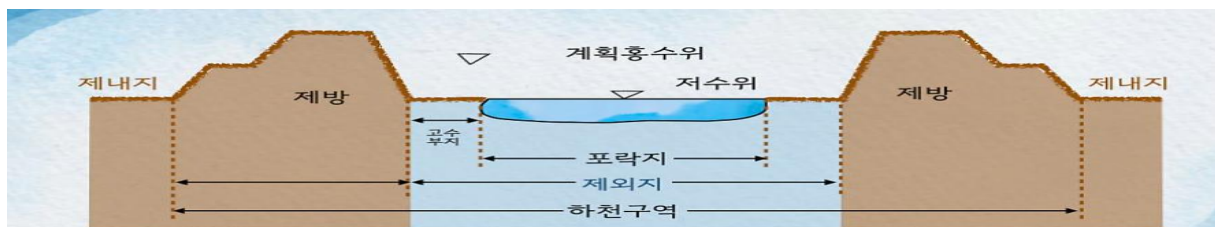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4)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에 상습침수 지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하천법상의 관리범위(하천구역)를 벗어나는 제내지¹⁵⁾ 침수지역에 대한 포함 문제와 각 법령에 따른 계획 및 사업 내용의 중복 및 책임의 불명확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¹⁶⁾,

현재에도 하천법 시행령¹⁷⁾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¹⁸⁾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군 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검토하고, 관련 사항은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반영하고 있으므로, 침수 우려 지역의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현행 법령의 협의 절차에 따라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15) 하천구역 이외(제방 바깥쪽)의 지역(하천용어해설-국토교통부)



16)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방재지구 각 계획의 기술기준과 수립 목적이 달라, 하천기본계획에 통합 시 전문성과 일관성 저하 우려가 있으며, 서로 다른 부처·지자체의 권한이 혼합되어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예산 배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7) 「하천법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3. 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18)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2520호)

2.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2)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4) 관련계획의 내용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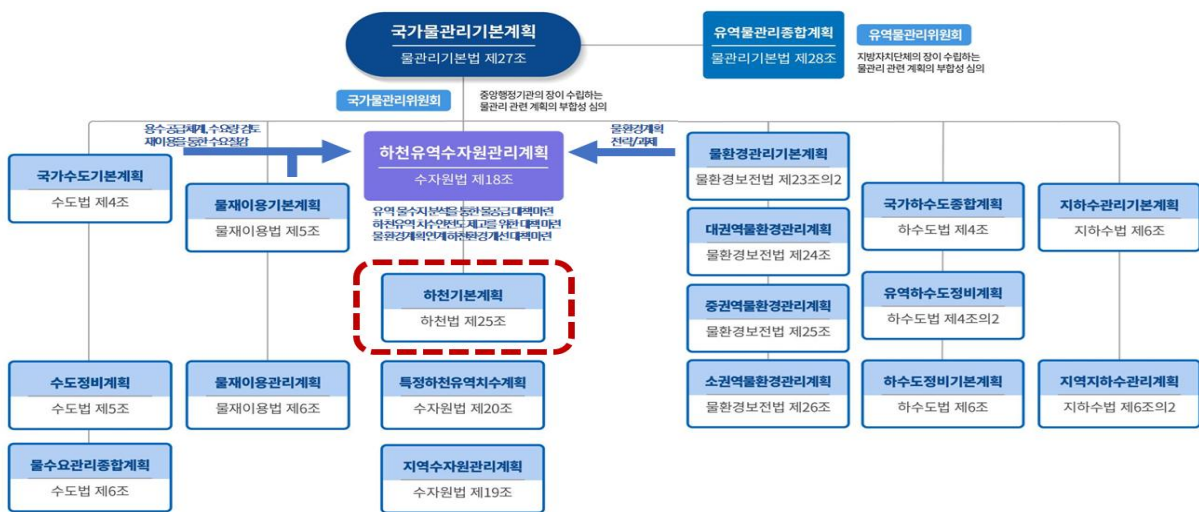
02)6788-5547

참고 1

하천기본계획 개요¹⁹⁾

- **(목적)**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법적근거)**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
- **(계획의 위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계획 마련

《물 관련 주요 계획 체계》



- **(수립시기)**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 **(내용)** 하천 유역의 치수·이수·하천환경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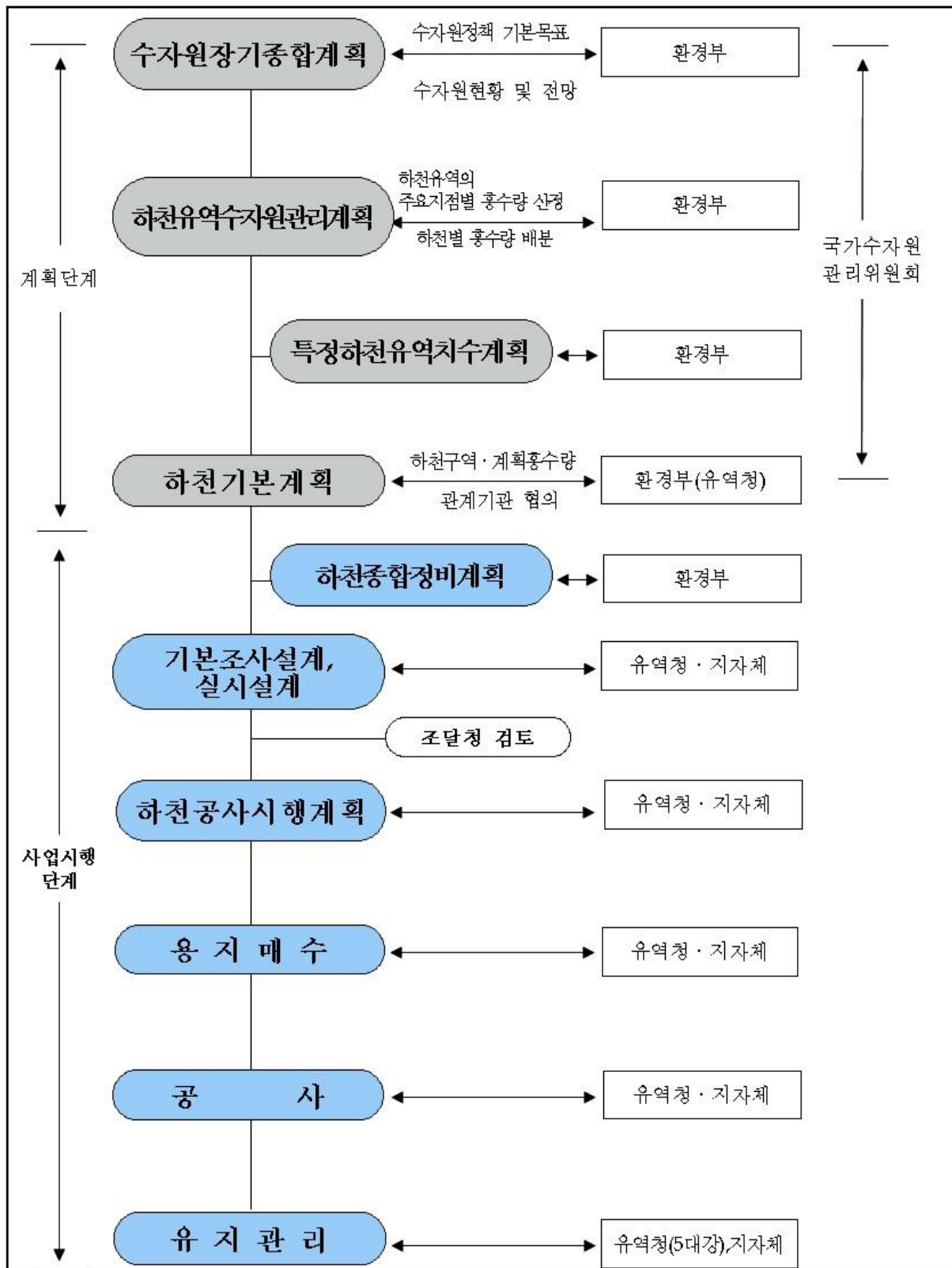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2

하천공사(하천정비사업) 절차²⁰⁾



2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